



2년 이상 다니던 회사를 3월에 그만두고 4월 말에 귀국할 예정 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세가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었는데, 퇴직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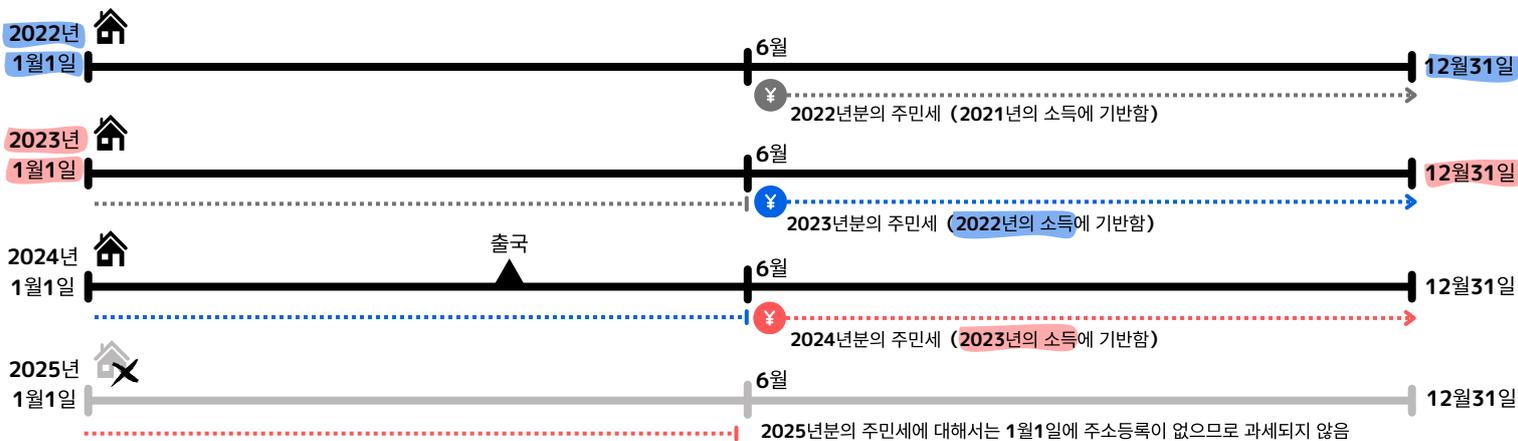
주민세가 급여에서 공제되던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이하의 방법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1. **보통징수** : 시구청촌에서 발송된 납부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이나 편의점,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지불하지 않은 주민세를 직접 지불합니다. (※납부방법은 시구청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 **1차성 징수** : 지불하지 않은 주민세의 전액을 급여나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회사가 시구청촌에 지불합니다.

덧붙여 주민세는, 1월 1일 시점에 일본에 주소가 있고, 전년도에 일정 금액 이상의 급료를 받은 사람이라면, 외국인 이더라도 살고 있는 시구청촌에 지불할 필요가 있는 세금입니다. 1월 2일 이후에 일본에서 출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2024년 1월 1일에 일본에 주소가 있고, 2023년에 일정 금액 이상의 급료가 있었으므로, 귀국한 후에도 주민세를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분의 주민세의 납부서는 2024년 6월경에 시구청촌 에서 발송 됩니다만, 그 전에 이미 출국하여 일본을 떠나 있는 경우는, 직접 납부서를 수취하여 세금을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출국하기 전에 자신을 대신하여 세금 관련 수속을 할 수 있는, 일본에 주재중인 사람을 납세 관리인으로 정하여 살고 계신 시구청촌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구청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주의점

- 납기일까지 납세하지 않은 경우, 원래 지불해야 하는 세액에 더하여 연체료가 추가로 징수되게 됩니다.
- 지불해야할 주민세가 지불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류기간 갱신신청, 재류자격 변경신청, 영주 허가 신청 등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6월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하기 전에 주민세를 전액 지불할 수 있다면, 따로 납세 관리인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자료

주민세를 냅시다!

(홋카이도 외국인 상담센터)

언어: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간체자/번체자), 한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크라이나어



주민세 납세를 잊지않시다!

(총무성)

언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포르투갈어

